

정보화 법제연구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ICT 거버넌스 개선 방향

지능정보사회로의 안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제2016-09호 (2016. 8. 31)

지능정보화 법제연구

목 차

- I.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
- II. 지능정보사회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
- III. 지능정보사회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
- IV. 결론

▶ 작 성 : 한국교원대학교 정필운 교수

▶ 문 의 : 한국정보화진흥원 ICT미래전략팀 김형준 수석연구원
(053-230-1207, khjoon@nia.or.kr)

앞 표지 안쪽 인쇄

‘정보화 정책연구’는 ICT 환경 변화를 조사·분석하고 ICT를 활용하여 국가사회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NIA에서 기획·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 목 차 >

제1절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

1. 융합서비스의 범람
2. 인간 주체성 원칙의 붕괴와 인간 존엄성 위협
3. 모호한 법적 책임과 리스크 증대
4. 소결: 주체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가진 거버넌스의 필요성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

1. 현행 ICT 거버넌스의 현황 및 문제점
2. 평가

제3절 지능정보사회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

1. 새로운 ICT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원칙
2. 주무부처의 개선 방안
3. 심의·의결기관의 개선 방안
4. 심의·의결기관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
5. 정부 중심 거버넌스 개선 방안

제4절 결론

□ 지능정보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관찰자적 관점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거버넌스 정립 필요

- 융합서비스는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대부분 기득권과의 대결을 수반하므로 융합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사업적 이득을 가진 자와 행정부에서 기존 업무 관장권자의 반발을 억누를 강력한 추진 체계 필요
- 자율 학습 능력을 갖춘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걸맞는 로봇윤리를 정립하여 않으면 자칫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필요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의 도입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법적 책임이 모호한 상태가 상존하고, 리스크가 증대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 필요

□ 현행 ICT 행정을 위한 거버넌스는 기대하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됨

- 현행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방송통신정보기술정책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면서도, 방송통신규제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이른바 진흥-규제 분리형을 채택
- 한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방송통신정보기술정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이해 조정 등을 하도록 함
-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방송통신정보기술정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융합 활성화에 기대되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이 보고서에서는 지능정보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IC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이에 충실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함

- 지능정보화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과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ICT 기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합한 독립제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유지하는 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 중앙행정기관과 별도의 심의·의결기관이 필요하며, 현행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폐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소속 하의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

회와 그 산하에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실무위원회 별도로 신설할 것을 제안함

- 심의·의결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공공기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지원토록 하는 안을 제안함
 - 지능정보화의 기반 기술과 서비스 개발·적용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의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강화하고, 의회주의에 충실하게 국회를 존중하는 거버넌스로 재편할 것을 제안함
-

제1절 지능정보사회의 특징과 새로운 거버넌스의 필요성

1. 융합서비스의 범람

(1)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

□ 전통적인 규율과 새로운 규율의 필요성

○ 방송과 통신 산업은 전통적으로 국가가 엄격한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었음

- 방송의 경우 (i) 전파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이용을 원하는 자 중 허가를 받은 일부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희소성이론(scarcity rationale), (ii) 전파자원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경제적 효율성이론, (iii) 전파는 공중이 신탁한 국유 재산이므로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국유재산이론(government property rationale) 등이 규제의 근거였음¹⁾

- 통신 산업은 네트워크의 자연 독점성을 이유로 독점을 인정받는 대신에 공중 통신사업자로서 무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가 의무화되어 왔음²⁾

○ 방송통신융합이 진행되면서 이와 같은 구조가 변화

- 전파가 아닌 통신망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방송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 즉, 인터넷동영상 서비스가 등장하였고,³⁾ 그 사업자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논의가 되었음

- 특히 IPTV는 네트워크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전파가 아니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반면, 서비스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방송서비스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전통

1) 이상 정필운, “전파의 국가 규제에 대한 공법이론적 연구: 규제의 정당화근거 및 할당제도의 설계를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8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2010. 2. 참고.

2) 이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정필운, “통신영역규제의 정당화 논거 연구”, 「공법학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제15권 제3호, 2014.8., 79쪽 이하 참고.

3) 정필운, 김슬기,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시장 불공정행위의 규율”, 「언론과 법」 제11권 제1호, 한국언론법학회, 2012.6., 192쪽

적인 수직적 규율체계를 취하고 있는 국내 방송통신법제에서 이를 방송으로 규율할 것인지 통신으로 규율하여야 할지 논란이 많았음

- 통신업계는 IPTV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송서비스가 아닌 인터넷 서비스라고 주장
- 방송업계는 IPTV가 IP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결국 제공되는 서비스의 핵심은 방송콘텐츠이며, ‘실시간’ 방송서비스가 주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방송서비스라고 주장

□ 공론화 과정과 법제의 마련⁴⁾

- o 국내에서 IPTV 산업의 도입 논의는 2004년 하반기 KT 등 통신사업자가 IPTV 서비스의 도입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시작되었으나,⁵⁾ (구)방송위와 (구)정보통신부,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찬반의견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음
- o 국무조정실의 ‘멀티미디어정책협의회’도,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정책협의회’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
- o 2006년 7월 민관합동위원회인 국무총리 자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이른바 ‘융추위’)와 2007년 1월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방송특위)에서 합의 도출
 - 융추위는 문광부·산자부·정통부장관, 방송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도 포함한 민관합동위원회였음
 - 2007년 4월 IPTV를 방송이 주된 서비스로 보고, 허가를 통하여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자회사 분리 및 사업권역 제한은 하지 않는 법률 중립적 도입안을 제시
 - 2007년 1월 국회에서 방송통신특별위원회(방송특위)를 구성하여 기구 통합과 도입방안을 논의하였으며,⁶⁾ 7월 국회 방송특위 소속위원을 중심으로 모두 7

4) 이 부분은 김광재 외, 「2008-2013, IPTV 5주년 백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2013, 313-315쪽 요약.

5) 김광재 외, 「2008-2013, IPTV 5주년 백서」, 2013.

6) 실제 법제화 과정에서도 반영되어 2007년 당시 IPTV 도입과 관련하여 국회 제출된 법안이 7개에 이르기

개의 IPTV사업법 제정안이 발의

- 국회의 집중적인 논의 끝에 12월 28일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고, 2008년 4월 18일 시행
- o 최초의 융합서비스라고 불리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인 IPTV 서비스에 대해서는 오랜 진통 끝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을 마련
- 이 법은 IPTV방송 서비스가 다른 융합서비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함
- 그럼에도 이 법률 제정에 지나치게 시간이 소요되어 그 효과가 반감된 면도 있다고 평가됨⁷⁾

(2) 원격의료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

□ 원격의료의 개념과 유형

- o 원격의료란 원거리에 있는 의사가 정보통신장비를 이용하여 환자와 의사소통하여 의료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함
- o 여기에는 원거리에 있는 의사와 환자가 다른 매개자 없이 정보통신장비만으로 의사소통하는 경우와 원거리에 있는 의사와 환자가 또 다른 의사를 대동하여 정보통신장비로 의사소통하는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음

□ 원격의료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

- o 이 중 후자의 경우 이미 지난 2002년 3월 의료법 제30조의2를 신설하여 이를 허용하고 있음
- o 전자의 경우 2002년 이후 끊임없이 논의되고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나 아직도

도 한다. IPTV 도입 논의 시점부터 법률 제정까지 약 3년, 사업자 허가까지는 약 4년 소요되었다.
 7) 이에 관해서는 정필운, 정원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 2015 참고.

이를 허용하는 법률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음

- 핵심적인 원인은 원격의료의 시행에 따라 불이익이 예상되는 중소의료인, 지역의료인과 그 시행에 따라 이익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병원과 서울 지역의 의료인의 격한 대립에 기인
- 국민의 대표인 국회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대립을 조정하지 못하기 때문임

(3) 우버서비스에 대한 법적 대응⁸⁾

□ 원격의료의 개념과 유형

○ 우버는 2014년 10월부터 서울에서 우버 서비스를 시작

- 우버는 서비스가 활성화될 때까지 기사들에게 2천 원의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고, 승객들에게는 요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함

○ 서울 지역에 한해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우버블랙'(UberBLACK), 동료나 이웃 등 지인과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엑스'(uberX) 서비스를 출시

□ 원격의료 서비스를 둘러싼 논쟁

○ 국토교통부는 우버 서비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유상운송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결론

○ 서울시는 2015년 1월 2일부터 서울 시내에서 우버택시가 영업하는 것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히고 단속에 나서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을 부과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위반으로 기소된 (주)MK코리아와 회사 대표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⁹⁾

8) 위키피디아,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B2%84> (2015년 12월 15일 최종 방문)

- 이 와중에 서울시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우버 앱을 차단해 달라는 요청에 방통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를 보류한 것으로 알려짐

o 국내에서 우버 서비스는 좌초되었음

(4) 소결

□ 융합서비스는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대부분 기득권과의 대결을 수반함

o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 우버 서비스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융합서비스는 일반적인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대부분 기득권과의 대결을 수반함

- 시장에서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득권자, 행정부에서 기존에 그러한 영역을 관할할 권한을 가진 기득권자가 버티고 있음.

- IPTV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방송위원회가 그러한 입장에서 있었으며, 원격의료의 경우 지역의 의료인이, 우버의 경우 택시사업자와 국토교통부가 그러한 입장에서 있었음

- 따라서 융합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반발에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¹⁰⁾

□ 융합 서비스가 시장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체계가 필요

o 정부의 조정 능력이 필요함

- 미국의 통신방송융합 대응에서 FCC와 같이 다행히 새로운 융합서비스가 기

9) 2014고단9688. 이상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3669> (2015년 12월 15일 최종 방문)

10) 이상 정필운, 정원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 2015.

존에 한 행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는 행정부의 기득권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서비스의 법적 대응 지연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구조가 자동적으로 원활한 법적 대응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부처 내에서 부서이기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의 조정 능력의 부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
- o 시장에서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득권자, 행정부에서 기존에 그러한 영역을 관할할 권한을 가진 기득권자의 반발을 억누르고 융합 서비스가 시장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가 중요함

2. 인간 주체성 원칙의 붕괴와 인간 존엄성 위협

□ 인간 주체성 원칙의 붕괴 우려

- o 법률행위의 주체는 인간뿐이라는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율적인 판단 능력¹¹⁾을 가진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됨¹²⁾
 - 따라서 근대 법학의 대전제인 법률행위의 주체는 인간뿐이라는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¹³⁾
 - 나아가 제한적인 자율적 판단 능력을 행사하는 로봇에게 트롤리 문제와 같이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프로그래밍할 것인지도 문제

□ 인간 존엄성을 위협하는 기술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음

11) 로봇이 진정한 의미의 자율적 판단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답할 수 없다. 그러나 제한적인 자율적 판단 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고인석, “아시모프의 로봇 3법칙 다시 보기: 윤리적인 로봇 만들기”, 철학연구 제93권.

12) Rayn Calo, Robotics and the Lessons of Cyberlaw, California Law Review, Vol.103, Issue 3, 2015.

13) 사회적 필요에 의하여 법인을 자연인과 같은 것으로 창조한 경험이나 동물에 대한 권리주체성 논쟁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걸맞는 로봇윤리를 정립하여 이를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자칫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두운 전망도 오래 전부터 제기됨
- 이것은 ICT 영역에게는 새로운 도전임¹⁴⁾
 - 이것은 유전자 조작 등 BT(생명공학기술) 영역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었으나, 이제 ICT 영역에서도 이것이 강건너 불이 아니라 현안이 된 것임
 - 따라서 지능정보사회의 ICT 거버넌스는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어야 함
 - 관찰자적 입장이 아니라 참여자적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

3. 모호한 법적 책임과 리스크 증대

-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으며, 모호한 법적 책임 상태가 상존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의 도입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법적 책임이 모호한 상태가 상존
 - 그 도입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경우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하는지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함
- 리스크 증대에 대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
 -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리스크가 증대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함

4. 소결: 주체적 관점에서 리더쉽을 가진 거버넌스의 필요성

14) 이것은 Pamela Samuelson, "Five Challenges for Regulating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Christopher T. Marsden ed., Regulating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 Routledge, 2000 에서 제기한 ICT 영역에서 가치 보존(value protection)의 문제와는 그 양상을 달리한다.

- 지능정보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ICT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인간 존엄성의 위협 문제과 리스크를 관리할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
 - 많은 융합서비스를 양산하는데, 이러한 융합서비스가 시장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시장과 정부 내의 기득권 세력을 억제할 거버넌스 필요
- 관찰자적 관점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
 - 이른바 ‘알파고 현상’을 보는 우리 사회의 접근 방법 중 지능정보사회가 어떻게 도래할 것이고, 그 모습은 어떨지,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여야 하는지라는 관찰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지능정보화를 가능케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 이므로 관찰자적 관점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에서 이를 전망하고 이를 기획할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됨

제2절 지능정보사회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

1. 현행 ICT 거버넌스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조직법

□ 국가정보화, 정보통신산업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 2012년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

- 이에 따라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과거 지식경제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협력·진흥, 과학기술인력 양성, 원자력 연구·개발·생산·이용,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호·정보문화,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및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를 관장
- 과학기술 영역과 정보통신 영역을 관장하는 대부처에 걸맞게 차관 2명을 두도록 규정

□ 그 밖에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분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

-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 및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

○ 디지털 콘텐츠,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에 관한 사무를 담당

(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둔

- 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3)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

□ 개요

- ICT 추진체계와 관한 것은 제2장에서 자세히 규율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추진체계의 구축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통신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실태조사 등,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의 운영,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의 업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보통신전략위원회

- 이 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통신 전략위원회를 설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략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제7조는 전략위원회 위원의 구성, 위원 및 위원장의 임명, 심의·의결 사항, 정

보통신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을 명시

○ 활성화추진실무위원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해서는 제9조와 제10조에서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단체 및 기업 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거나 조사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
-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는 1. 제3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벤처 간의 상생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 2. 제3조제4항에 따른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을 발생시키는 법·제도 개선 3. 제3조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진흥 및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4. 정보통신 관련 기업 및 단체 등의 애로 사항 및 건의 사항 처리 5. 그 밖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항을 그 업무로 하며, 그 사항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한편, 이 법은 정보통신의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따라서 이 대상에 관하여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산업융합 촉진법」 등의 법률과 다른 내용이 이 법이 우선함¹⁵⁾
- 그리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고 이 법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신설하여 ICT 분야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전자정부법」 등과 같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의 집행법 성격의 법률이 이 추진체계를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한도 내에서는 ICT 영역의 기본법과 같은 역할을 수행함

15) 황창근, 앞의 글.

(4) 소결

- 박근혜 정부는 진흥-규제 분리형을 채택하고, 이른바 분산형¹⁶⁾을 채택하고 있음
 - 현행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방송통신정보기술정책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면서도, 방송통신규제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이른바 진흥-규제 분리형을 채택
 - 한편, 전자정부 영역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디지털 콘텐츠 영역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기능하도록 규율하고 있음. 이와 같은 조직법에 따라 작용법인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정부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에서는 각 부처가 권한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 한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방송통신정보기술정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이해 조정 등을 하도록 하고 있음

2. 평가

-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융합 활성화에 기대되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¹⁷⁾
 -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신방송융합서비스, 원격의료 서비스, 우버 서비스 사례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융합서비스는 일반적인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대부분 기득권과의 대결을 수반
 - 따라서 시장에서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득권자, 행정부에서 기존에 그러한 영역을 관할할 권한을 가진 기득권자가 버티고 있음.
 - ※ IPTV의 경우 방송사업자와 방송위원회, 원격의료의 경우 지역의 의료인, 우버의 경우 택시사업자와 국토교통부가 그러한 입장에서 있었음

16) 분산형 거버넌스의 장단점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김상택, 김해람, 임연규, “국가 ICT 거버넌스 개편 방안”, 정보와 사회 제22호, 2012 참고.

17) 예를 들어, 황창근, 앞의 글.

- 그러므로 융합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반발에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¹⁸⁾
- o 시장에서 사업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기득권자, 행정부에서 기존에 그러한 영역을 관할할 권한을 가진 기득권자의 반발을 억누르고 융합 서비스가 시장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체계가 중요한데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임
- 나아가 타 법의 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정보기술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 권한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 융합 이외에는 이렇다 할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함

18) 이상 정필운, 정원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대한 입법평가”, 입법평가연구 제9호, 한국법제연구원, 2015.

제3절 지능정보사회에서 ICT 거버넌스에 대한 구상

1. 새로운 ICT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원칙

- 지능정보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IC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IC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지능정보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이 기본 원칙에 충실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지능정보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ICT 거버넌스 구축의 기본 원칙
 - 지능정보화는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하여 인간 생활에 빠르게 적용되므로 그 범위와 속도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추진체계가 필요¹⁹⁾
 - 지능정보화는 ICT 기술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 존엄성의 위협 문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하고, 전문성있는 추진체계가 필요
 - 지능정보화는 많은 융합서비스를 양산하는데, 이러한 융합서비스가 시장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을 억제할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
 - 지능정보화의 기반 기술과 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현재보다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를 확대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
 - ICT 정책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²⁰⁾
 -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그럴 때면 늘 개편의 대상이었던 ICT 행정 조직을 크게 개편하지 않아 ICT 행정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19) 임도빈,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에 관한 단상”, 한국행정학회 2012년 7월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20) 김상택, 김해람, 임연규, “국가 ICT 거버넌스 개편 방안”, 정보와 사회 제22호, 2012.

- 관료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견제하기 위하여 정치가와 전문가의 적절한 견제가 가능하여야
- 합헌성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²¹⁾에 충실하여야
- 스노든 사태 이후 국제적인 인터넷 거버넌스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2. 주무부처의 개선 방안

□ 1안: 현행 유지안

-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과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ICT 기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합한 독립제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유지하는 안

○ 장점

- 이미 설명한 것처럼 과학 행정에서는 BT를 통하여 인간 존엄성 위협에 대처한 경험이 있으므로, ICT 기술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 존엄성에 상대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정보통신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예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형이 독립행정위원회형보다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그럴 때면 늘 개편의 대상이었던 ICT 행정조직이 개편되지 않으므로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측됨

○ 단점

- 과학 행정에 비하여 ICT 행정이 상대적으로 예산, 인사 등에서 소외되어 추진력이 떨어진 우려가 있음

21) 임도빈,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에 관한 단상”, 한국행정학회 2012년 7월 하계학술대회 발표문.

-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조직 개편을 일삼는 우리 현실에서 일반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법률에 근거한 독립행정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부처에 비하여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2안: ICT 전담부처 신설 안

-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독립제 중앙행정기관을 유지하되, 과학 행정과 ICT 행정을 분리하여 ICT를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안

○ 장점

- ICT 행정을 위한 예산, 인사 등을 독자적으로 하여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과거 예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형이 독립행정위원회형보다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짐

○ 단점

- 지능정보화에서는 ICT 기술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 ICT 행정이 이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조직 개편을 하는 일삼는 우리 현실에서 별도의 독립된 법률에 근거한 독립행정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부처에 비하여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 이번에도 5년만에 ICT 행정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우려됨

□ 3안: 독립행정위원회형 부처 신설안

-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이 ICT 기술을 담당하는 독립행정위원회형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는 안²²⁾

○ 장점

- ICT 행정을 위한 예산, 인사 등을 독자적으로 하여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조직 개편을 하는 일삼는 우리 현실에서 별도의 독립된 법률에 근거한 독립행정위원회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부처에 비하여 오래 지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음

○ 단점

- 지능정보화에서는 ICT 기술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 ICT 행정이 이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이번에도 5년만에 ICT 행정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지속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우려됨
- 우리나라에서는 중앙행정기관형이 독립행정위원회형보다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짐
- 독립행정위원회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를 선언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²³⁾

□ 소결: 현행 유지안(1안)

-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과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ICT 기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합한 독립제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유지하는 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근거

22) 독립행정위원회형의 일반적인 장단점에 관해서는 김상택, 김해람, 임연규, 앞의 글 참고.
 23) 미국의 이른바 단일 정부 이론에 따른 주장.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성엽, “한국의 ICT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에 관한 시론적 연구”, 행정법연구 제34호, 2012.

- 지능정보화가 과거 정보화와 가장 뚜렷한 차이는 ICT 기술이 그간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 존엄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데, 그러한 경험이 없는 ICT 행정 이 이에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임
- 지능정보화는 많은 융합서비스를 양산하는데, 이러한 융합서비스가 시장의 판단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을 억제할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함. 그러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는 것은 독립행정기관형보다 독립제 중앙행정기관형이 우월함
- 한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조직 개편을 하고, 그럴 때면 늘 개편의 대상이었던 ICT 행정조직을 안정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제1안이 이를 만족시키는 비교적 좋은 대안이 됨

3. 심의·의결기관의 개선 방안

□ 필요성

- 인간 존엄성에 대하여 대처, 시장과 국가기관의 기득권 세력과 혁신 세력의 주장을 조정할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별도의 심의·의결기관 필요
 - 중앙행정기관을 담당하는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과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ICT 기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합한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유지하는 안은 강력한 추진체계가 가져야 할 조정 기능이 미흡
 - 인간 존엄성에 대하여 대처, 시장과 국가기관의 기득권 세력과 혁신 세력의 주장을 조정할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과 별도의 심의·의결기관 필요
- 구체적 형태는 현행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유지하는 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하는 안, 대통령 소속 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음

□ 1안: 현행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유지하는 안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유지하는 안

○ 장점

- 정권이 바뀔 때마다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자주 개편이 된 ICT 진흥 추진 체계를 개편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참여자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의 메시지 전달 가능
- 방송·통신 콘텐츠와 다른 성격의 규제인 지능정보화 규제 업무를 주로 하는 독자적 심의·의결기관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단점

- 정보통신전략위원회가 ICT특별법에서 부여한 융합 활성화에 기대되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²⁴⁾인데 이를 계속 활용하는 것은 자칫 추진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계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음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간사가 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현행 위원회가 인간 존엄성에 대하여 대처, 시장과 국가기관의 기득권 세력과 혁신 세력의 주장을 조정할 강력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임

□ 2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하는 안

○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를 활용하는 안

○ 장점

- 기존 행정조직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조직을 개편하면서도 대폭의 개편을 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어 시장참여자에게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의 메시

24) 예를 들어, 황창근, 앞의 글.

지 전달 가능

- 그동안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조직의 노하우를 지능정보화 심의·의결 업무에 활용할 수 있음

o 단점

- 지능정보화에서 요청되는 행정 업무는 그간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였던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와 다소 중첩적이고 유사하나 엄밀하게는 다른 업무임
- 방송·통신 콘텐츠 규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 지능정보화 업무를 이를 다루는 기관에서 함께 다루도록 하는 것은 독자적 심의·의결 기능을 저해하고 집중력을 해칠 염려가 있음
- 현행 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이므로(제3조 제2항), 동일한 위상의 중앙행정기관이 또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조직법리상 매우 중대한 문제임

□ 3안: 대통령 소속 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안

- o 현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폐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소속 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안

o 장점

- 인간 존엄성에 대하여 대처, 시장과 국가기관의 기득권 세력과 혁신 세력의 주장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심의·의결 기능 행사 가능
- 방송·통신 콘텐츠와 다른 성격의 규제인 지능정보화 규제 업무를 주로 하는 독자적 심의·의결기관을 유지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o 단점

- 지나치게 자주 ICT 행정 추진체계를 개편함으로써 ICT 행정 추진체계 안정성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
- 이런 경우라도 대통령이 ICT 행정을 국정 의 우선 순위에 두고 운용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다는 우려

□ 소결: 대통령 소속 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안(3안) 채택

- 현재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폐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소속 하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현재 상황에 적합하고 독립제 중앙행정기관과 조화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됨

○ 근거

- ‘알파고 현상’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능정보화는 인간 존엄성 위협과 시장과 국가기관의 기득권 세력의 발발을 초래할 혁신을 수반하는 중대한 전환점(turning point)이 될 것이므로 인간 존엄성 유지, 시장과 국가기관의 기득권 세력과 혁신 세력의 주장을 조정 등의 가장 강력한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심의·의결기관임
-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고 조직법적인 결함을 피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을 개편하지 않음으로써 지나치게 자주 ICT 행정 추진체계를 개편하여 안정성을 해친다는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임

□ 구체적 구상

- 개요: 현행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폐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소속 하의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실무위원회 별도로 신설

○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의 구성

- 대통령과 민간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구상
- 위원은 국무총리, 행정부의 ICT 관련기관 장관급(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행정

자치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

- 국회가 추천하는 민간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국정 운영의 중심인 국회를 존중하고 협업하는 분위기 조성
- 민간위원에 업계와 시민사회 인사를 폭넓게 기용

o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실무위원회의 구성

-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 산하에 정무적 성격의 실무를 수행할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실무위원회의 신설
-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맡되, 실질적으로는 청와대 (가칭) ICT 수석비서관이 핵심기능을 담당하도록 배려
- 전략위원회 위원은 행정부의 ICT 관련기관 국장급으로 구성(정보통신 전담차관 예하 국장, 미래창조과학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장, 방통위 기획조정실장, 방송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o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권한 및 운영

- ICT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 의결, 평가 기능을 부여하여 정책의 환류시스템 구축

4. 심의·의결기관 지원 체계의 개선 방안

□ 필요성

o ICT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 의결, 평가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 기관이 필요함

-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정무적 판단에 최적의 직급과 자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별도의 지원 기관이 필요

-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지원토록 하는 방법도 구상할 수 있으나, 관료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견제하기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공공기관이 지원토록 하는 것이 타당
- o 구체적 형태는 현행 공공기관 중 하나를 활용하는 안, 새로운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음

□ 1안: 현행 공공기관 중 하나를 활용하는 안(제1안) 채택

- o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공공기관 중 하나에게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지원토록 하는 제1안이 상대적으로 우안
- o 장점
 - 당해 공공기관이 정보화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음
 - 공공기관 신설 억제라는 정부 정책과 조화되며,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불필요하다는 실무적 이득이 있음

o 단점

- 정보화 지원 기능을 수행하면서 구축된 인적 관계가 역작용을 하여, 관료제 하에서 실제 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위에 눌러 제대로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
- 이를 지원할 역량을 갖춘 공공기관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잠식당할 우려

□ 2안: 새로운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안

- o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공기관을 신설하는 안

o 장점

- 관료제에서 구축된 인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에 구애받지 않고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필요한 전공의 우수 인력을 채용한다면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잘 지원할 수 있음

○ 단점

- 기관 내 축적된 역량이 없으므로 전적으로 새로 채용된 인력의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여 상당한 불확실성 내포
- 공공기관 신설 억제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불일치하며,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한 별도의 실무적 노력이 필요

□ 소결: 현행 공공기관 중 하나를 활용하는 안

-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공공기관 중 하나에게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지원토록 하는 안이 정부 정책 기조에 적합하고 독립제 중앙행정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한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됨
- 여러 공공기관 중 정보화 정책 지원 경험이 풍부하고, 정책 기획과 조정, 의결, 평가 기능의 지원을 위한 인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5. 정부 중심 거버넌스 개선 방안

□ 필요성

- 지능정보화의 기반 기술과 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의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지능정보화의 기반 기술과 서비스 개발 및 적용의 주체인 민간의 자율성을 강

화하고, 정책 결정 단계에 그 의사를 투입할 기회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것이 타당함

□ 개선방안

○ 사회(시장)의 거버넌스 내 참여 및 활동 강화

- 지능정보화의 기반 기술 연구 및 개발비(R&D) 사용을 위한 기획 단계부터 민간의 노하우 투입할 기획을 증진
- 지능정보화 서비스 개발 및 적용 단계에서 민간의 애로를 주기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청취된 목소리를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책 기획에 반영
- 미래창조과학부가 업계와 자율규제를 위한 코드를 제시하고, 이를 업계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동규제체계(co-regulation system) 구축

○ 국회의 거버넌스 내 참여 및 활동 복원

-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국회가 하여야 한다는 의회주의를 지능정보화 영역에도 구현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가 직접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여 법률의 형식에 담도록 배려하고 협업하는 분위기를 조성

제4절 결론

- 지능정보화는 융합서비스가 많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법적 책임이 모호하고 리스크가 증대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새로운 거버넌스가 필요함
 - 융합서비스는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으므로 대부분 기득권과의 대결을 수반하므로 융합서비스가 시장에 도입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반발에 가장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함
 -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걸맞는 로봇윤리를 정립하여 이를 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자칫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두운 전망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리스크가 증대하고 있으며, 모호한 법적 책임 상태가 상존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의 도입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능정보화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단계에서 법적 책임이 모호한 상태가 상존하므로, 그 도입 허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경우에 법적 책임을 어떻게 분배하여야 하는지 논의하고 결정하여야 함
 - 사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리스크가 증대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여야 함
- 관찰자적 관점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에서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거버넌스 필요
 - 이른바 ‘알파고 현상’을 보는 우리 사회의 접근 방법 중 지능정보사회가 어떻게 도래할 것이고, 그 모습은 어떨지,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적응하여야 하는지라는 관찰자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지능정보화를 가능케 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이므로 관찰자적 관점이 아니라 주체적 관점에서 이를 전망하고 이를 기획할 리더십을 가진 새로운 거버넌스가 요구됨

- 박근혜 정부는 진흥-규제 분리형을 채택하고, 미래창조과학부에게 방송통신정보 기술정책의 중앙행정기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에 관한 규제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심의기능을 부여하였으나 기대하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됨
 - 현행 박근혜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여 방송통신정보기술정책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면서도, 방송통신규제에 있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이른바 진흥-규제 분리형을 채택
 - 한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방송통신정보 기술정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융합 활성화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이해 조정 등을 하도록 함
 -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방송통신정보기술정책을 기반으로 한 산업의 융합 활성화에 기대되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지능정보화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IC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 원칙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거버넌스 구축 필요하므로, 이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ICT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필요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함
- 지능정보화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은 현행 미래창조과학부와 같이 과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 ICT 기술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을 합한 독립제 중앙행정기관 형태를 유지하는 안이 상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 중앙행정기관과 별도의 심의·의결기관은 필요하며, 현행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폐지하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소속 하의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실무위원회 별도로 신설하는 안이 현재 상황에 적합하고 독립제 중앙행정기관과 조화될 수 있는 안이라고 판단
- 심의·의결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공공기관 중 하나에게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지원토록 하는 안이

정부 정책 기조에 적합하고 독립제 중앙행정기관을 적절히 견제하기 위한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

- 기존의 정부 중심 거버넌스를 민간과 국회를 존중하는 거버넌스로 재편할 것을 제안함
 - 지능정보화의 기반 기술과 서비스 개발 및 적용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기존의 정부 중심의 거버넌스 구조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지능정보화의 기반 기술과 서비스 개발 및 적용의 주체인 민간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책 결정 단계에 그 의사를 투입할 기회를 획기적으로 증진하는 것이 타당함
 - 지능정보화 영역에도 의회주의를 구현하기 위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은 (가칭) 지능정보사회촉진위원회가 직접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결정하여 법률의 형식에 담도록 배려하고 협업하는 분위기를 조성

2016년도 정보화 법제연구 보고서

- 제1호(2016. 7), 「인공지능(AI)과 기본소득(BI) 논의의 법적검토」
- 제2호(2016. 8), 「지능사회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의 현안과 법적 해결과제」
- 제3호(2016. 8), 「지능형 로봇의 법적 현안과 해결과제」
- 제4호(2016. 8), 「무인항공기(드론)의 법적 현안과 해결과제」
- 제5호(2016. 8), 「자동차의 자율운행기능에 따른 법률환경의 변화와 대응」
- 제6호(2016. 8), 「가상현실(VR : Virtual Reality) 현안과 법적쟁점」
- 제7호(2016. 12), 「지능사회 법제도 이슈 전망 : 2017」
- 제8호(2016. 8), 「지능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국내외 기후변화 정책동향 및 시사점」
- 제9호(2016. 8), 「지능정보화 촉진을 위한 ICT 거버넌스 개선 방향」

1.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수행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결과입니다.
2. 본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는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4. 본 보고서 내용에 대해 무단전재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한국정보화진흥원」이라고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